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 이대론 안된다

신국환의원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후원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용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5월 15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이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동향”에 대해 이인섭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장이 발표하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 등 정부관계자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업계 그리고 중소기업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책 운용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중소기업인 대표로 발표한 신제원 비콤시스템 대표의 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20년째 자동차제어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그 동안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비롯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일반경쟁 입찰 및 민수까지 모든 제도를 충분히 경험해 왔으며 이들 제도에 대한 특성이나 장단점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으나 단체수의계약제도는 다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많은 기여를 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고 하나 참여기업이나 전체 물량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인들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통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예측 경영이 가능하였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었다.



그러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된 현재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수주불안으로 예측경이 어려울 뿐 아니라 확실하지도 않은 장래의 수주에 대비하여 적지 않은 인

건비를 부담하여야하고 일거리가 없는 종업원들은 사장보다 더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공공기관 위주의 수요물품인 경우 오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회사의 운명을 걸어야하는 실정인 바 1건의 경쟁입찰에 수십 수백 개의 업체가 응찰하고 있는 현실에서 낙찰자로 선정되기란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 품목의 경우 단체수의계약으로 한 달에 40~50건씩 발주되던 것이 경쟁 입찰 전환 이후 발주건수가 한 달에 10건도 채 되지 않고 있다.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를 주도한 중기청에서는 새로운 공공구매제도인 중소기업간 제한 경쟁으로 전환되면 단체수의계약 연간 실적 5조원보다 훨씬 많은 8조원 또는 12조원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이 실현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새로운 공공구매제도 아래서 이와 같은 예측을 믿는 중소기업자는 아마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우리 제품은 2005년부터 경쟁제도로 전환되었으나 변경제도에 대한 일선수요기관의 인식부족 또는 중소기업제품 기피의도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입찰참여 자격의 제한 없는 일반경쟁이나 규격, 가격분리 2단계 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등으로 구매하고 있는 사례도 허다하나 이에 대한 규제나 마땅한 제재장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은 원칙적으로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중기청에서는 조달청의 요청에 의해 '2단계 경쟁 입찰'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종합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등을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줌으로써 조달청에서는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중소기업간 경쟁의 경우 낙찰자선정방법을 계약이행률평가 외에 예외적으로 협의해주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물론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특성에 따라 최적의 낙찰자 선정으로 위하여 예외적인 방법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구매기관에서는 예외적인 제도를 이용하여 사업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인위적 진입제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현행 공공구매제도에서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과 지명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지명경쟁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조합원 중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증대를 위하여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해 조합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지명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공공구매제도가 다수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이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끊임없이 보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일시에 무차별적으로 폐지하므로 써 발생하게 될 다수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정금액(2억원)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조합을 통한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참여기업을 조합원 50인 미만의 소기업으로 제한하여 운영함으로써 소기업 지원과 계약이행 및 하자보증을 조합이 책임지도록 하여 구매행정의 효율성으로 아울러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현행 공공구매제도에서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과 지명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지명경쟁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조합원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증대를 위하여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해 조합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지명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행 5천만원 이하 물품에 구매시 소액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시행령에서는 소액구매 중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조합 추천에 의해 중소기업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5천만 원까지 확대하여 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어야 한다. ◎